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49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허성무·김종민·김문수

박지혜 · 윤종오 · 이수진

이강일 · 서미화 · 김동아

송재봉 · 오세희 · 정혜경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 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,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.

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, 해당 기관이 공 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 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, 제14조, 제16조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)"를 "(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설립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협회는"을 "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"으로, "정보·기술·교육·훈련·연수·상담·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"를 "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"를 "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과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3항) 중 "지원센터의 설치와"를 "진흥원의 설립과"로 한다.

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
-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 추천
- 2.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
- 3. 장애인의 창업 지원
- 4.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· 훈련 및 연수
- 5.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
- 6. 장애인기업 애로 상담 지원
- 7.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
- 8.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또는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
- 9.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⑥ 그 밖에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협회(지원센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를 "협회·진흥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협회"를 "협회·진흥원"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지원센터가"를 "진흥원이"로, "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"를 "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"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2호 중 "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"를 "한국장애인기업진 흥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으로 본다.
 - 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 - ④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 - 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,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.
 - 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가 행한 행위 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- ⑦ 진흥원 설립 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⑧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	제13조(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
의 설치) ① 협회는 장애인의	설립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
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	관은
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<u>정보</u>	<u>한국</u>
·기술·교육·훈련·연수·상	장애인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
담·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	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	
인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	
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	
<u>있다</u> .	
<u><신 설></u>	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
	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
	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
	을 둔다
<u><신 설></u>	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
	을 수행한다.
	1.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 추
	<u>천</u>
	2.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
	자료 제공
	3. 장애인의 창업 지원
	4.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・훈

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.

련 및 연수

- 5.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
- 6. 장애인기업 애로 상담 지원
- 7.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
- 8.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또는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
- 9.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흥 원의 설립과 -----
- ⑥ 그 밖에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.
- ⑦ 진흥원의 설립과 -----

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 (생 략) 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정부는 <u>협회(지원센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있다.
- ③ 정부는 <u>협회</u>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 산 또는 금원(金員)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 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(損 金)에 산입(算入)할 수 있다.
- 제16조(「민법」의 준용) ① (생 7 략)
 -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① 7 (생 략)
 - ② 이 법에 따른 <u>지원센터가</u> 아 닌 자는 <u>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</u> <u>터</u>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<u>협회·진흥원</u>
③ <u>협회·진흥원</u>
제16조(「민법」의 준용) ① (현
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제1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①
(현행과 같음)
② 진흥원이
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 -
<u>.</u>
제21조(과태료) ① (혀해과 간음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		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장</u>	2 <u>한</u>		
<u>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</u> 또는	국장애인기업진흥원		
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			
자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